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538

발의연월일: 2024. 11. 13.

발 의 자:이언주・민형배・정성호

문정복 • 이상식 • 정진욱

강준현 • 이광희 • 오세희

박지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벌대기업들은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회사 주주의 주식소유현황, 순환출자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관한 사 항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해외계열사 지분에 대한 공시 의무화 규정이 없어 지난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보듯 재벌대기업들은 그동안 총수 및 그 일가의 해외계열사 지분소유 현황을 숨겨왔음.

이에 동일인의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소유하고 있는 외국 법인의 주식보유현황을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8제1항제9호 신설).

한편 재벌대기업들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검찰수사 등 사후적·외부적 규제를 통해 처벌하고 있어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재벌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회사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의 성과 및 최고경영자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 등이 포함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만들어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적·내부적 통제를 통해 자연스레 재벌대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8조의2신설).

법률 제 호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동일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 인의 주식보유 현황
- 10. 그 밖에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기업집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28조의2(지배구조 내부규범)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는 주주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회사의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임 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 성과평가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 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이하 "지배구조 내부규범"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규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 1.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
- 2. 회사가 매년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라 이사회 등을 운영한 현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집단현황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하여 공시하는 경우부
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기업집단 현황 등에 관	제28조(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한 공시) ① 공시대상기업집	공시) ①
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중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	
사는 그 기업집단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	
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u><신 설></u>	9. 동일인이 직접 또는 특수관
	계인을 통하여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보유 현황
<u> <신 설></u>	10. 그 밖에 과도한 경제력 집
	중을 방지하고 기업집단의 투
	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28조의2(지배구조 내부규범)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
	사 중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는 주주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회사의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임원의 전문성요건, 임원 성과평가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지켜야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이하"지배구조 내부규범"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규정 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 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 다.
- 1.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제정하 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
- 2. 회사가 매년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라 이사회 등을 운영한 현황